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친철행정국장
제출연윌일	2020. 11. 24.

참여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대민서비스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21년 공무원 기준인력 증가분을 직급·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 O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구의 증설,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의 폐지 등일부 기구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한시기구의 폐지(안 제3조, 안 제6조)
 - 미래발전사업단(존속기한 : 2020. 12. 31까지) 폐지
- 나. 관련법에 규정한 과단위 행정기구 요건에 부적합한 기구의 폐지(안 제7조의2)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폐지 → 자문기구로 전환
- 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구 분리 및 신설(안 제4조, 제5조)
 - 민원과 신설: 민원토지과 → 민원과(친절행정국), 토지정보과(행복도시국)
- 라. 부서 명칭변경 및 이관 등 변경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5조, 안 제6조)
 - 전략기획실 ⇒ 전략사업실
 -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과
 - 정보통신과 ⇒ 디지털뉴딜과
 - 사회적경제과 ⇒ 뉴딜경제과
 - 희망마을건설과 ⇒ 건설과
 - 동고동락국 관광체육과 ⇒ 친절행정국 관광체육과
 - 미래발전사업단 미래사업과 ⇒ 친절행정국 미래사업과
 -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 ⇒ 친절행정국 국방협력과
 - 행복도시국 농업정책과 ⇒ 동고동락국 농업정책과
 - 행복도시국 축산자원과 ⇒ 동고동락국 축수산과
 - 친절행정국 환경과 ⇒ 동고동락국 환경과

마. 2021년도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조정(안 제20조, 안 별표 6)

- 정원의 총수: 1,089명 → 1,104명(증 15명)

▶ 4급: 6명 → 5명(△ 1명)

▶ 5급: 60명 → 58명(△ 2명)

▶ 6급이하 : 973명 → 991명(증 18명)

바 국·단·과 단위 조정(요약)

현 행	변 경
○ 본청 : 3국 1단 / 5(실·기획단) / 27과 ○ 의회 : 1국	 ○ 본청 : 3국 / 4(실) / 28과 ※ 한시기구종료 및 조직개편 ○ 의회 : 1국
○ 소속기관 : 2직속기관, 2사업소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공공시설사업소, 서울시업소 ○ 하부행정기관 : 2읍 11면 2동	○ 되외 : 1곡 ○ 소속기관 : 2직속기관, 2사업소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공공시설사업소, 서울사업소 ○ 하부행정기관 : 2읍 11면 2동

구 분	부 서	비고				
폐지	미래발전사업단	△1				
폐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부시장 직속)	Δ1				
신 설	민원과(친절행정국)	+1				
	전략기획실 ⇨ 전략사업실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 디지털뉴딜과					
명칭변경	축산자원과 ⇨ 축수산과(동고동락국)					
	사회적경제과 ⇨ 뉴딜경제과					
	희망마을건설과 ⇨ 건설과					
	민원토지과 ⇨ 토지정보과 (행복도시국)					
	관광체육과 (동고동락국 ⇨ 친절행정국)					
	미래사업과 (미래발전사업단 ⇨ 친절행정국)					
과 이동	국방협력과 (미래발전사업단 ⇨ 친절행정국)					
	농업정책과 (행복도시국 ⇨ 동고동락국)					
	환경과 (친절행정국 ⇨ 동고동락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개정조례안 공포 후 추경에 반영 예정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3) 규제심사: 대상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30. ~ 2020. 11. 18.(20일간)

나) 예고결과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041-635-2332)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사업단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를 "(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 사업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국·단의 설치)"를 "(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복도시국, 미래발전사업단"을 "행복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환경과, 정보통신과, 민원 토지과"를 "디지털뉴딜과, 관광체육과, 미래사업과, 국방협력과, 민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민방위·재난관리, 치수 및 방재"를 "민방위·재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관광진흥, 체육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11. 미래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 사항
- 12. 탑정호 관광명소화, 역사문화 관광명소화 추진
- 13.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14.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 15. 강경근대문화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 사항

- 16. 국방협력, 국방산단, 국방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 17. 민원·여권·가족관계등록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제1항 중 "관광체육과"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농정혁신, 친환경농업, 농산, 양정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11.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 12. 축산 및 수산에 관한 사항
- 13. 환경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 환경자원 및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자원과, 산림공원과, 희망마을건설과"를 "뉴딜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과"로, "맑은물과"를 "토지정보과, 맑은물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학교급식지원"을 "건설정책, 농업기반시설, 지역개발,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축산 및 수산"을 "도로, 교통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10호) 중 "광고물관리, 디자인총괄"을 "광고물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가관리,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지적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전략기획실,"을 "전략사업실,"로, "전략기획실은 시정기획·정책개발1·정책개발2·생활SOC추진·성과평가"를 "전략사업실은 시정기획· 뉴딜정책·정책관리·생활SOC추진·도시경관디자인"으로, "홍보기획·언론 홍보·뉴미디어"를 "언론홍보·방송홍보·뉴미디어홍보"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89명"을 "1,10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73명"을 "1,088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별표 6과 같이 하고, 한시기구의 직급별 정원 및 운용시한

은 별표 7"을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민원토지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 ②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사회적경제과장"을 "뉴딜경제과장"으로 한다.
- ③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국·단장 및 실장·과장"을 "국장 및 실장·과장"으로 한다.
- ④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뉴딜경제과장"으로 한다.
- ⑤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전략기획실"을 "전략사업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미래발전사업단"을 삭제 한다.
- ⑥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미래발전사업단장"을 삭제한다.
- ⑦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행정지원과, 도로교통과, 희망마을건설과"를 각각"자치행정과, 민원과, 건설과"로 한다.

별표4 중 "희망마을건설과"를 "건설과"로 한다.

- ⑧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사회적경제과"를 "뉴딜경제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사회적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자원과장"을 "뉴딜경제과장, 농 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으로 한다.
- ⑨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략기획실장, 사회적경제과장"을 각각 "전략사업과장, 뉴딜경 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사회적경제과"를 "뉴딜경제과"로 한다.

- ①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사회적경제과장"을 "뉴딜경제과장"으로 한다.
- ①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사회적경제과장"을 "뉴딜경제과장"으로 한다.

- ②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뉴딜경제과장"으로, "희망마을건설과장"을 "건 설과장"으로, "사회적경제담당"을 "경제정책담당" 으로 한다.
- ③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희망마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민원토지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 ④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민원토지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 ⑤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축산자원과장"을 "축수산과장"으로 한다.
- ⑥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축산자원과장"을 "축수산과장"로 한다.

- ①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축산자원과장"을 "축수산과장"으로 한다.
- ®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략기획실"을 "전략사업실"로 한다.
- ①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전략기획실장"을"전략사업실장"으로 한다.
- ②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행정지원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② 논산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전략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을"전략사업실장,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
- ②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 ②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2항 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를 각각 "자치행정과장, 자치 행정과"로 한다.
- ②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②6 우리논산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②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②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	소 관	: 부	を	}	명		
입	행 7	정지	원고	가 장	김	병	호
안	인	사	팀	장	ा	재	성
자	담	Ę	}	자	국 (74	광 6-52	호 .33)

[^{별표 6}]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u>(제**22조제1**항 관련)

	<u>.</u> n			의회 사무기구				
구 분	총 계	소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계	의회 사무국
총 계	1,104	1,088		1,088			16	16
정무직 계	1	1	1					
시 장	1	1	1					
일반직 계	1,058	1,042		1,0)42		16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1
5급	58	56	33	6	2	15	2	2
6급 이하	991	978		9	78		13	13
전문경력관	3	3		;	3			
별정직 계	2	2		2	2			
6급상당 이하	2	2		,	2			
연구직 계	4	4		1	1			
연구관								
연구사	4	4		,				
지도직 계	39	39		3				
지도관	4	4		1	4			
지도사	35	35		3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사업단장 및 실장ㆍ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u>과장의 직급 등)</u> ① 시 본청의	<u>등</u>) ①
<u>국장, 사업단장</u> 의 직급, 본청·	<u>국장</u>
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	
기관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	
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u>(국·단의 설치)</u> 시의 행정	제3조(국의 설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친절행	
정국, 동고동락국, <u>행복도시국,</u>	<u>행복도시국</u>
<u>미래발전사업단</u> 을 둔다.	
제4조(친절행정국) ① 친절행정국	제4조(친절행정국) ①
에 <u>행정지원과</u> , 안전총괄과, 세	<u>자치행정과</u>
무과, 회계과, <u>환경과, 정보통신</u>	<u>디지털뉴딜과, 관광</u>
<u>과, 민원토지과</u> 를 둔다.	체육과, 미래사업과, 국방협력
	과, 민원과
② 친절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②
분장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안전관리, <u>민방위·재난관리,</u>	6 <u>민방위·재난관리</u>
<u>치수 및 방재</u> 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환경관리, 환경지도, 자원순

 환, 환경자원 및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u>10</u>. (생 략)

<신 설>

- 11. 민원·여권·가족관계등록 에 관한 사항
- 12. 지가관리, 부동산관리, 지적

 관리, 지적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의2(동고동락국) ① 동고동 락국에 마을자치분권과, 100세 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 복지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과, 관광체육과를 둔다. <삭 제>

- 9. (현행 제10호와 같음)
- 10. 관광진흥, 체육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11. 미래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 사항
- 12. 탑정호 관광명소화, 역사문 화 관광명소화 추진
 - 13.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 업에 관한 사항
 - 14.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 15. 강경근대문화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 사항
 - 16. 국방협력, 국방산단, 국방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 17. 민원·여권·가족관계등록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동고동락국) ① -----

- <u>농업정책과,</u> 축수산과, 환경과

-----.

- ② 동고동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8. (생략)
- 9. 관광진흥, 체육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u>10</u>.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행복도시국) ① 행복도시국 저 에 사회적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자원과, 산림공원과, 희망 마을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 친화재생과, 안전도로과, 시민 교통과, 원스톱허가과, <u>맑은물</u> 과를 둔다.

- ② 행복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3. (생략)
- 4.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2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현행 제10호와 같음)
10. 농정혁신, 친환경농업, 농산,
양정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 및 수산에 관한 사항
13. 환경관리, 환경지도, 자원순
환, 환경자원 및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데5조(행복도시국) ①
뉴딜경제과, 산림공원과, 건
설과
<u>토지정보</u>
과, 맑은물과
·.
②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정책, 농업기반시설, 지

역개발, 하천관리-----

- 5. 농정,농어촌개발과 유통특작

 에 관한 사항
- 6. 친환경농업, 농산, 양정 및 유 통에 관한 사항
- 7. 축산 및 수산에 관한 사항
- 8. (생략)
- 9. 건설정책, 희망마을만들기, <삭 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10. 도시계획 및 개발, 공동주 택, <u>광고물관리, 디자인총괄</u>에 관한 사항
- 11. 도로, 교통행정,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12. ~ 14. (생략)
- 제6조(미래발전사업단) ① 한시기 구인 미래발전사업단에 국방협 력과, 미래사업과를 둔다.
 - ②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사업단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방협력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 사항
 - 2. 국방혁신도시 조성 관련 사<u>항</u>
 - 3. 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

<삭 제>

<삭 제>

- 7. <u>도로, 교통행정</u>-----<u>5</u>. (현행 제8호와 같음)
- 11. 지가관리, 부동산관리, 지적 관리, 지적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 8. ~ <u>10</u>. (현행 제12호부터 제1 4호까지와 같음)

<삭 제>

및 협력 관련 사항

- 4. 국방산업단지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 기반구축 및 협력 관런 사항
- 5. 국방대학교 상생발전사업 수 립 및 추진 관련 사항
- 6. 국방대학교 협력 사업 관련 사항
- 7. 국방대학교 지역민 융화 사 업 관련 사항
- 8. 민·관·군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 9.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관련 사항
- 10. 호남고속철도 KTX 훈련소

 역 신설 추진
- 11. 육군훈련소 연계 관광자원화 추진
- 12. 미래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

 관련 사항
- 13. 탑정호 관광명소화(복합레

 져단지 조성)추진
- 14. 역사문화 관광명소화 사업

 총괄
- 15.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 업에 관한 사항

16. 충청유교문화원 건립17. 강경근대문화 관광명소화사업 관련 사항

제7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 위 행정기구의 설치) 시 행정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을 두며, 전략기획실은 시정기획·정책개발1·정책개발2·생활SOC추진·성과평가 사무를, 참여예산실은 예산·재정지원·의회법무·규제개혁통계사무를, 청렴감사실은 감사·조사·계약심사·특사경전담 사무를, 열린홍보실은 홍보기획·언론홍보·뉴미디어 사무를 분장한다.

제7조의2(실과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구의 설치) 체계적인 도시계획 구상 및 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08</u> <u>9명</u>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

세7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
위 행정기구의 설치)
<u>전략사업실,</u>
<u>전략사업실은 시정</u>
<u>기획·뉴딜정책·정책관리·생</u>
활SOC추진·도시경관디자인 -
<u>언론홍보•</u>
<u>방송홍보·뉴미디어홍보</u>
<u><</u> 삭 제>
제20조(정원의 총수)
<u>1,104</u>
<u>명</u>

- 와 같이 구분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 1,073명
- 2. (생략)

② (생 략)

제22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 렬별정원의 규정)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5급이상 정원 및 6급 이하 정원은 <u>별표</u> 6과 같이 하고, 한시기구의 직 급별 정원 및 운용시한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
1 1,088명
2. (현행과 같음)
제22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
렬별정원의 규정) ①
<u></u> 별표 <u>6</u>
②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별표 6】						
<u>정원관</u> i	리기된	간별	직:	급•	직립	達	정목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 직렬별 정원표									
	(제22조제1항 관련)											1222	조제]	1항 	관련)		
			₹	집행기	란			희 기구					3	집행기	관		의회 사무기구	
구 분	총 계	소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소계	의회 사무 국		구 분	총 계	소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소계	의회 사무 국
총계	1,089	1,073					16	16		총계	1,104	1,088					16	16
정무직 계	1	1	1							정무직 계	1	1	1					
시 장	1	1	1							시 장	1	1	1					
일반직 계	1,043	1,027					16	16		일반직 계	1,058	1,042					16	16
3급	1	1	1							3급	1	1	1					
4급	6	5	4	1			1	1		4급	5	4	3	1			1	1
5급	60	58	35	6	2	15	2	2		5급	58	56	33	6	2	15	2	2
6급 이하	973	960		90	60		13	13		6급 이하	991	978		9	78		13	13
전문경력관	3	3		;	3					전문경력관	3	3		;	3			
별정직 계	2	2		:	2					별정직 계	2	2		:	2			
6급상당 이하	2	2		2	2					6급상당 이하	2	2		;	2			
연구직 계	4	4		,	4					연구직 계	4	4		,	4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4	4			4					연구사	4	4			4			
지도직 계	39	39		3	9					지도직 계	39	39		3	9			
지도관	4	4			4					지도관	4	4			4			
지도사	35	35		3	5					지도사	3 5	35		3	5			

	-	<u></u> 현	ŏ	 행		개 정 안			
【별3	亚7]						<u>〈</u> 삭 제〉		
<u>한</u> 시	기구의 직								
	(제22	[조제] 	[항 	관현	권) 				
 관 리	소속부서	구분	구분				운용 시한	비고	
기관별		직 종	직 급	정 원	20 12	,			
	호 ᆌ	총 7	4	1					
	총계	일반직	4급	1					
본청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	일반직	4급	1	2020년 12월 31일까지				

붙임1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1. 의견수렴 기간 : 2020. 10. 30 ~ 11. 18 (20일간)

2. 의견수렴 방법

O 입법예고

3. 의견수렴 결과

O 의견제출 : 총 4건

O 의견내용 및 반영여부

	16 × 1097	
의 견 제출자	의 견 내 용	반 영 여 부
조직관리 위원회	O 부서명칭의 변경 - 축산자원과 부서명칭에 대하여 젓갈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명칭 변경 의견	○ 부서명칭 변경- 당초) 축산자원과 □ 축수산과 변경 반영
행정지원과	○ 부서명칭의 변경 - 시정의 흐름 및 국가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부서명칭 변경 의견	 ○ 부서명칭의 변경 - 민선 5 · 6 · 7기 마무리 시점 및 국가 정책 등을 고려하여 부서명칭 변경 반영 전략기획실 ➡ 전략사업실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 디지털뉴딜과 사회적경제과 ➡ 뉴딜경제과
	○ 부서유지 및 국 소관부서 조정 - 사업추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미래사업과 유지 필요 - 국소관 부서 조정으로 각 국별 적정 과 수 조정 필요	 ○ 부서유지 및 국 소관부서 조정 - 기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등 사업추진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미래사업과 존치 의견반영 * 친절행정국 배치 - 관광체육과 □ 친절행정국 관광체육과 - 환경과 □ 동고동락국 환경과 - 토지정보과 □ 행복도시국 토지정보과 * 국 소관부서 적정 과수 조정 반영
	O 직급별 정원 조정 - 부서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 필요	 ○ 직급별 정원 조정 - 당초) 4급 5명, 5급 57명, 6급이하 992명 - 변경) 4급 5명, 5급 58명, 6급이하 991명 - 부서조정에 따른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직급별 정원 조정 반영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ㅇ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o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공무원 인 건비를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단가(30,000천원)로 산정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0% 적용
- ㅇ 직급 변동에 따른 직급간 인건비 차액을 반영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0% 적용

나. 추계결과: 673.903천원(5년 추가소요액)

o 5년 추가소요액: 673,903천원 (단위: 천원, 명)

구 분	1인기준 추가소요액	인원	금 액	연 도	합 계
합계		15	126,933	5개년	673,903
기준인건비 기 준	30,000	4	120,000	5개년	637,096
직급 변경 <u>차액</u> (9급 ⇒ 8급)	1,104	5	5,520	5개년	29,306
직급 변경 <u>차액</u> (8급 ⇒ 7급)	2,626	5	13,130	5개년	69,709
직급 변경 <u>차액</u> (7급 ⇒ 6 급)	3,933	4	15,732	5개년	83,523
직급 변경 <u>차액</u> (5급 ⇒ 6급)	-9,806	-2	-19,612	5개년	-104,123
직급 변경 <u>차액</u> (4급 ⇒ 5급)	-7,837	-1	-7,837	5개년	-41,608

3. 작성자

행정지원과장 김병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X	입	126,933	130,741	134,663	138,702	142,864	673,903
	시 비	126,933	130,741	134,663	138,702	142,864	673,903
X	출	126,933	130,741	134,663	138,702	142,864	673,903
인건비		126,933	130,741	134,663	138,702	142,864	673,903
○ 보수	<u>-</u>	126,933	130,741	134,663	138,702	142,864	673,903
재원 조달		126,933	130,741	134,663	138,702	142,864	673,903
의존 재원	소 계	126,933	130,741	134,663	138,702	142,864	673,903
	보조금						
	지방교부세	126,933	130,741	134,663	138,702	142,864	673,903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	업 특별회계						
(채무=	기 타 부담, 민자 등)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제22조, 제112조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워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 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 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